

테러대응 역량강화 방안

테러대응 역량강화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최 경 환

목 차

I .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II . 테러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5
1. 경찰특공대의 테러대응훈련 강화	5
2. 중요 요인과 중요시설대상에 대한 테러대응	9
3. 대테러 첨단장비 보강	12
III . 대테러 예방능력 강화	14
1. 대테러활동 역량 강화	14
2. 테러예방 홍보활동 강화	16
3.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예방활동 강화	19
IV . 테러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강화	21
1. 법적 토대 마련	21
2. 제도적 정비	25
3. 국내외 테러대응협조체제 구축	27
V . 결론	29
참고문헌	32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세계테러사건 추이	7
<표 2> 테러유형별 사건	8
<표 3> 테러대상별 사건	11
<표 4> 테러사건 유형별 책임기관	23

I. 서론

1. 연구목적

2010년은 천안함 피격사건 및 G20 정상회의 등 테러 관련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시기였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발표 이후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테러위기 '주의' 경보에 따라, 테러 관련 유관기관별로 전국 대테러 긴급구조대 및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며, 대테러 종합훈련을 강화하였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채널을 유지하며, 테러 첩보 수집·전파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하였다. 경찰은 중요 요인과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응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국민 여론은 G20 정상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현정부의 G20 진행에 관해 긍정평가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정부의 G20 정상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잘했다'는 의견이 50.0%, '매우 잘했다'는 의견이 21.6%로 나타나, 긍정평가가 71.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 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15.2%에 불과했다.¹⁾ 이 여론조사는 정부의 G20 진행에 대한 평가여서 경찰의 역할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이 경호와 경비 등 테러에 대비한 활동을 전담한 결과인 점에 비추어보면, 경

1)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2010. 11. 15.

찰 역시 만족할 만한 대테러 대응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경찰의 테러대응 활동과 그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테러에 대비한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선행연구로는, 이선기의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²⁾는 부산 APEC 행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 4개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 및 현장활동단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테러학회의 “G20 정상회의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³⁾에서는 VIP 신변보호, 항공테러방지를 위한 보안활동,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위협 대비방안, 북한의 테러가능성 및 대비 전략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서상열의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⁴⁾은 요인테러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 경호안전활동 강화, 교육훈련 및 다양한 경호기법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동균과 신익주의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⁵⁾는 국제회의 및 스포츠행사에 대한 10년간의 테러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 자원 확보를 주장하였다. 최진태의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⁶⁾는 1968-2006년까지의 테러 유형별 분석을 통

2) 이선기,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2009, 105-138면.

3) 한국테러학회, “G20 정상회의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2010.

4) 서상열,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235-259면.

5) 박동균·신익주,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61-179면.

6) 최진태,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2008, 337-358면.

해 테러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시영의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 무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⁷⁾에서는 대규모 테러단체의 대량살상무기와 첨단 과학장비로 무장한 이에 대한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무기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정훈과 김태환의 “유럽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⁸⁾은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테러방지법안 제정 및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제와 송재현의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⁹⁾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테러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행사 및 국가정보원의 대테러센터의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상열의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¹⁰⁾은 국제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제거, 지원자금 봉쇄, 테러 대응의 국제적 연대 강화 및 정부의 총괄적인 종합대책 강구를 주장하고 있다. 박준석의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¹¹⁾에서는 대테러대책에서 선진국형 대테러 통합센터 설립, 경호와 경비시스템의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 전환 방안, 대테러방지법과 전문가 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준석의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은 적극적인 테러예방홍보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권정훈의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¹²⁾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테러대응 실태 분석을 통해 통합형 테러대응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7) 최시영의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 무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2010 여름호), 한국테러학회, 2010, 167-191면.

8) 권정훈·김태환,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29-50면.

9) 조성제·송재현,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9호, 2009, 274-283면.

10) 서상열,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 2005, 99-131면.

11) 박준석,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95-214면.

12)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그리고 오세연·김학범의 “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관한 연구”¹³⁾는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2010 여름호), 2010, 박용현의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¹⁴⁾는 테러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예방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테러에 대한 발생요인, 조직과 자금 차단, 테러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교육, 경찰의 현장활동 대응 역량 및 수사권 역량 강화,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선진국형 통합 테러대응 체제 구축, 유관기관과의 국내외적 연대 및 협력 강화, 테러예방홍보활동의 중요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해 테러 관련 도서와 연구논문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테러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은 테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테러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대테러 예방능력 강화, 그리고 테러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테러 대응 역량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13) 오세연·김학범, “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2010 여름호), 2010, 83-113면.

14) 박용현,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3호,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2007. 7, 225-234면.

II. 테러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1. 경찰특공대의 테러대응훈련 강화

1) 경찰특공대의 운영실태

경찰특공대는 대테러사건과 총기인질사건 진압, 기타 요인 경호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1983년 10월 5일 창설되었다. 1998년 9월 교육대 신설, 2000년 11월 여경특공대 운용, 그리고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 서울 경찰특공대 외에 부산, 대구, 인천 등 6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 경찰특공대는 경정을 대장으로 현재 4개 전술제대와 경호지원제대, 폭발물처리대장을 경감으로 보하고, 폭발물처리대에 경위를 팀장으로 하는 폭발물 탐지팀, 폭발물 처리팀을 운영하며, 교육대, 행정지원과로 편성되어 있다. 6개 지방경찰청의 특공대는 소규모부대로 행정팀, 전술팀, 폭발물처리팀, 탐지팀의 편제로 각 지방경찰청의 특성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사건 예방·저지, 폭발물 탐색·처리, 국가 중요행사 안전활동, 중요범죄 예방·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특공대원들은 특수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다양한 테러사건예방활동에 주력하여 테러 등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특공무술과 건물 종합훈련, 저격 훈련 등 테러에 대비한 대테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경찰특공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만 군 특수부대 출신자와 폭발물처리 및 탐지견 자격증 소지자 등 38명을 특별 채용하였다.¹⁵⁾ 특공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공대에서 ‘제3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를 개최(11월)하였다. 전술평가대회에서 개인전은 장애물극복, 사격, 레펠, 인질구출 등 개인 능력 평가(전술)를, 단체전은 저격, 장애물극복, 통로개척, 사격 등 팀별 능력 평가(전술)와 함께 차량내 폭발물 탐지, 물포 이용, 폭발물 처리(폭파·탐지) 등으로, 진압작전, 폭발물처리 등 실제작전 과정과 유사한 종목을 평가하고 있다. 전술, 저격수, 폭발물 처리, 탐지견 운용요원 등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¹⁶⁾ 또한 서울특공대 사격장, 광주특공대 장애물 극복 훈련장 등을 만들고, 인천특공대의 노후된 사격장을 보수하는 등 훈련시설을 보강하여 특공대원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 주관으로 인질협상 전문위원 및 통역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8월)를 실시하고, 실무요원 전문화 교육(2회)을 실시하여 대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에서 주관하는 화생방 테러 초동대응 교육에 경찰관을 위탁 교육시켜 전문요원으로 양성하였고, 제독부대, 공항기동대, 112타격대 등 대테러부대 요원을 군부대에 위탁 교육 시키는 등 화생방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¹⁷⁾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편제는 국내외의 테러위협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확대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인적 자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함께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경호요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

2) 테러대응훈련 강화

15)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268면.

16) 위의 책, 269면.

17) 위의 책, 269-270면.

한국이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조사의 질문에 시민들은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⁸⁾

최근 국내외 테러정세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작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거점지역인 칸다하르로 마약원료 물질을 밀수출하던 일당이 검거되었고(8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지하드 선동행위로 검거되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예멘에서 알카에다의 자살폭탄테러(3월)로 피해를 입었고, NGO 소속 봉사요원이 피랍 후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6월)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텔 연쇄 폭탄테러(7월)로 우리 기업인 1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가 탈레반 지역사령관으로부터 테러협박을 받았으며(8월), 탈레반이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팀 파견 중단을 촉구하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납치·폭탄테러를 경고(11월) 하는 등 테러위협이 지속되었다.¹⁹⁾

<표 1>은 테러정보통합센터(www.tiic.go.kr)에서 제공한 2001년에서 2010년 4월말까지 발생한 세계테러사건 통계자료이며, <표 2>는 테러 유형별 사건 통계자료이다.

<표 1> 연도별 세계테러사건 추이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사건	466	493	809	988	1,887	2,863	3,430	3,216	3,382	824	18,358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세계테러사건(2001~2010. 04) 통계자료임

18) 오세연·김학범, 앞의 논문, 83면.

19) 경찰청, 앞의 책, 267면.

<표 2> 테러유형별 사건

납치	72	방화	11
암살	12	무장공격	466
폭파	690	기타	12
계	1,263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테러유형별 사건(2009. 10. 30~2010. 04. 30)

경찰은 G20 정상회의와 아프간 재파병 추진에 따른 테러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경찰서 주관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로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다. 관할 지구대에서는 지하철역 연계 순찰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의 행사장 주변에 ‘경찰경호 종합상황실’을 가동하였고, 전국 경찰이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였으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틀간 총 5만명의 특공대, 기동대, 전·의경 인력을 경호·경비 업무에 투입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테러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G20 기획단을 조직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G20 기획단은 코엑스 행사장과 부대 행사장, 공항, 숙소 등 주요 장소의 출입통제를 위한 비표 관리를 맡았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경찰은 경찰경호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행사에 참여하는 VIP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예상되는 테러위협집단으로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및 국내단체 등²⁰⁾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G20 정상회의기간 동안 국내에서 정상회의를 방해할 만한 테러 위협과 기도는 발생하지 않

20) 이선기, “G20 정상회의시 안전대책방안 : VIP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2010년도 한국테러학회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테러학회, 2010, 30-38면.

았다. 최근 발생한 예멘발 미주행 소포 사건 등과 같이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기와 지하철 등에 대한 폭발물테러 및 우편물 폭발테러 등에 대한 다양한 대비를 하였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테러 유형별에 따른 테러대비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2. 중요 요인과 중요시설대상에 대한 테러 대응

1) 중요 요인의 테러 대응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국가요인에 대한 테러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습격에 의한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1974년 8월 15일 조총련 행동대장인 재일교포 문세광의 박정희대통령 저격미수사건과 육영수여사 저격,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1983년 미얀마 랭군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사건 등 주로 그동안 북한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이처럼 국가 정상이나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공격대상으로 한 요인 테러는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특히 국가 정상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가에 심각한 위기 및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정상과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및 국제스포츠행사 등에 빈번히 참석하는 관계로 테러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요인테러의 유형을 살펴보면, 총기류에 의한 저격, 폭탄테러, 독극물, 화생방테러, 항공기 테러, 인질, 방화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총기류에 의한 저격과 폭탄테러라고 할 수 있다.²¹⁾

지난 2007년 3월 2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라크 바그다드의 기

21) 서상열,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앞의 논문, 242-243면.

자회견장에서 알카에다와 관련된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국가’라는 테러 조직에 의한 로켓포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중요 요인에 대한 테러는 테러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요인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중요 요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중요시설대상에 대한 테러사건보다는 발생 빈도수가 낮은 편이나, 중요 요인에 대한 테러는 해당 국가에 심각한 위기 및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G20 정상회의시 현장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는 회의장과 참가 국가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서 과격 시위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 경호와 경비에 나섰다. 주요 20개국 정상과 정치권 인사, 귀빈 등이 집결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장 주변과 각국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서 테러나 과격 시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현장의 경호와 경비를 전담하는 경찰경호경비단을 가동하여, 최상의 경호·경비를 수행하였다. 경찰경호경비단에는 대테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경찰특공대를 비롯하여, 기동본부, 외빈경호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이처럼 국가요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경호경비단의 전문 경호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제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테러 대응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또한 필요하다.

2) 중요시설대상의 테러대응

<표 3>에서와 같이 세계적으로도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의 발생건수가 가장 높다.

〈표 3〉 테러대상별 사건

외국인·시설	103	국가중요시설	61
중요인물	88	군·경(관련시설)	589
다중이용시설	61	교통수단	18
민간인(민간시설)	338	기타	5
계	1,263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테러대상사건통계(2009. 10. 30 ~ 2010. 04. 30)

경찰은 작년에 테러에 대비하여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1,400여 개소를 시설별·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지방경찰청, 경찰서 주관으로 4,500여 회에 걸쳐 지하철역·백화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찰청 주관으로 시설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항공기 등 주요 시설물 폭파 협박에 대비하여 항공 관련 시설물 안전검측(700여회)을 실시하였고, 필요시 경찰력을 전진배치(800여회)하는 등 테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²²⁾

경찰청은 지난 천안함 사고원인 발표 뒤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인 ‘을호 비상령을 발령 및 대테러상황실을 가동하였고, 각 도내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체계적인 순찰과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주와 협의해 안전 활동 강화를 지시하였고,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에도 경찰력을 배치해 테러에 대비하였다.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테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근

22) 경찰청, 앞의 책, 268면.

무를 점검하였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였다. 다중이용시설중 서울역, 부산역 등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시설 내외부의 상가 등 밀집장소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 조치를 하였다.

경찰청은 지하철역 등에서 모형 폭발물가방을 이용한 상황부여 및 방폭 가방을 활용한 현실감 있는 대응조치로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하철은 G20 개최장소인 삼성역을 중점적으로 테러시 혼란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하철 경찰대를 중심으로 역내 승강장, 환승통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순찰과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대응에 주력하였다.

경찰의 테러대응훈련은 다중이용시설 테러를 가상 설정해 테러 진압훈련과 독가스 살포에 따른 대피 및 오염 제독 훈련, 건물화재에 따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 재난 수습 및 복구훈련 등으로 실시하였다. 기동타격대 대원들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범인을 향해 저격준비 연습 등 테러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및 화재 등을 대비한 매뉴얼은 안전사고 및 화재 등 재난 대비에 치중하여 있고, 테러예방 및 테러발생시 조치요령 숙지상태는 미흡한 편이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상황에 따른 업무 매뉴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3. 대테러 첨단장비 보강

최근 테러 관련장비의 하이테크화·일반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테러장비가 고전적 개념이나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면서 보호되고 있는 비행기, 주유소 및 기름, LPG 운반차량

등 시설이나 장비로써 그 지배권만 탈취하면 기존 장비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²³⁾

경찰은 ‘폭발물 처리 출동차량’, ‘코너샷’, ‘방폭텐트’ 등 첨단 대테러 장비 1,600여 점을 도입하여 급변하는 테러양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²⁴⁾

경찰은 테러 사전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G20 정상회의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를 동원하였다. G20 정상회의 행사장에 폭발물 처리로봇과 지능형 영상감시술루션장비 등 최첨단 보안장비를 통해 테러에 대비하였다.

경찰특공대의 테러 진압훈련에서는 40킬로그램짜리 특수 방탄처리복을 입은 경찰대원이 등장하였고, 또한 사람이 아닌 로봇 등 첨단장비를 경호·경비에 동원하였다. 특수 방탄처리복은 캐나다에서 제작된 세계 최고의 방폭복으로, 폭발물 파편 등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췄다. 로봇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폭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제작된 장치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며 현장 상황도 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 원격 로봇과 함께 일본제 탐색용 디지털 내시경도 보장되었다.

또한 국내 업체가 제작한 전파교란기도 무선으로 작동하는 사제폭발물을 무력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며, 반경 30미터 내의 20~2천5백 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차단이 가능하다.

테러에 대비한 최첨단 장비의 보장은 테러 위협을 감소시키고, 테러 대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테러범의 테러 무기를 사전에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대테러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는 개발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23) 박용현, 앞의 논문, 227면.

24) 경찰청, 앞의 책, 267면.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북한, 이란, 이라크 등과 같은 불량국가와 알카에다와 같은 대규모 테러단체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는 기존의 소총, 기관총, RPG-7(대전차 무기) 급조폭발물(IED), 장갑관통 폭발형 관통자(EFP) 등의 재래식 무기에서 화학·생물학 무기 및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고도의 첨단 과학장비를 기반으로 한 통신/전자장비, 관측장비, 스텔스 잠수함, 최첨단 탄약 등으로 무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⁵⁾

이에 대해, 국내 대테러 무기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첨단무기체계로는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무기, 무인잠수정(UUV), 음향탄(Sonic Bullets), 탄소섬유탄, 고섬광 발생탄 등을 제시하였다.²⁶⁾

Ⅲ. 대테러 예방능력 강화

1. 대테러활동 역량 강화

9·11 테러 이후 선진국가에서는 자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을 소극적인 반테러(anti-terrorism)에서 적극적인 대테러(counter-terrorism)로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²⁷⁾

25) 최시영, 앞의 논문, 186면.

26) 위의 논문, 187면.

27) 이상원, “counter-terrorism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화 방향”, 대테러연구 제31집, 경찰청, 2008, 193면.

대테러활동은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정부, 경찰, 군대 및 정보기관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테러리즘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리즘 혐의자의 관리, 테러리즘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리즘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²⁸⁾

발의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²⁹⁾의 제2조 1항에서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 및 국내 행사 안전 확보, 무력진압 등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예방과 테러대응을 위한 대테러활동의 핵심은 중요한 테러정보이다. 대테러정보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첩보를 평가하는 분석과정의 생산물로서, 관련된 첩보들을 통합하여 집약적인 꾸러미로 만든 후 테러예방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만들어 낸 테러관련 현상에 대한 결론이나 예측”이다.³⁰⁾

경찰은 테러정보 수집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국내외 테러정세와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국내외 테러징후현상이나 국제테러분자의 국내 잠입 등 테러관련 첩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경찰에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차원의 확인활동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은 의심되는 테러 첩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사,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28) 정우일,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190면.

29) 2008. 10. 28 공성진의원외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30) 표창원, “대테러 경찰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테러연구 제29집, 경찰청, 2006, 96면.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¹⁾ 현재로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경찰은 확실한 테러 정보 입수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경찰의 대테러 예방활동을 통해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는 어떠한 테러 위협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민이 경찰의 테러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내 테러 발생가능성을 낮게 보았음에도 테러예방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예멘에서의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소말리아 해상에서의 해상납치 등의 국외테러를 언론 등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³²⁾

이처럼 국내외 테러 정세가 고조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대테러예방활동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 특공대의 최우선 과제이다.

2. 테러예방 홍보활동 강화

테러 위협을 제거하고, 테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테러예방 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테러대응조직과 국민간의 조직-공중관계성 차원에서 테러예방 홍보의 접근이 필요하다.³³⁾

효율적인 테러예방 홍보의 관리는 긴밀한 시민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

31) 박준석,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168면.

32) 오세연·김학범, 앞의 논문, 99면.

33) 박용현, 앞의 논문, 226면.

력이 대테러에서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의 비합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대테러 관련법 및 테러 발생시 유형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³⁴⁾

경찰은 테러홍보활동으로 지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찰청에서 APEC 정상회의 대비 테러³⁵⁾에 대한 경각심 및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테러신고, 대응요령 홍보리플릿 20만부와 포스터 1만부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테러예방과 대응매뉴얼」 4천부, 대테러 안전활동 교육용 CD 250개를 경찰관서에 배부하여 다중이용시설·주요시설 안전관계자 및 유관기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테러 교육시 활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민방위훈련, 반상회, 지역민방,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최근 증가하는 테러정세 및 경찰 대테러 안전활동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서도 경찰은 적극적인 테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대테러 FTX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G20 홍보동영상 및 폭발물 위력시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통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최근 테러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대테러 관련 공동 마인드를 형성하였다.

경찰은 ‘테러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하였다. 각종 테러 위험이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엔 2백만원이하, 테러살인범을 신고한 경우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테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신고보상금제도는 최근 외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가 빈발하는 데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

34) 위의 논문, 228면.

35) 당시 부산지방항공청은 대테러 관련업무의 협조체제 강화, 대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 APEC 대비 대테러 교육 및 보안의식 제고, APEC 대비 보안검색 인원 및 장비 강화를 이룩하였다; 부산지방항공청, 부산 APEC 정상회의 안전한 하늘길을 열다, 2005, 47-55면.

고 국내에서도 각종 테러 발생 개연성에 따른 조치로, 테러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찰은 신고보상금과 별도로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 또는 테러 기도자를 검거하거나 테러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은 경감까지 특진시키며 대테러 사전 안전활동을 독려하고 있다.³⁶⁾

테러예방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테러정보 제공 및 연구자료 제공은 매우 효과적이다. 경찰은 국가 대테러 협상전문위원의 「해외 위험지역 아국인 테러예방 방안」(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테러리스트 자금추적 방안」(황의갑 동국대 교수) 등 15편의 연구실적을 수록한 「대테러연구 제32집」을 발간하였다. 연구집은 청와대, 국회도서관, 국방부 등 79개소에 1,100부를 배부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³⁷⁾ 또한, 경찰 대테러 협상실무요원들이 업무수행 중 채득한 테러유형별 대응방법 등 테러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자료집과 FBI 인질협상 기법을 중심으로 「위기협상 기법자료집」을 발간하였다.³⁸⁾

경찰의 이러한 테러예방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찰의 테러예방 홍보의 인식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테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낮다고 응답하는 등 낮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³⁹⁾

이처럼 경찰의 테러예방 홍보활동은 공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뿐만 아니라, 홍보 리플릿, 포스터, CD와 동영상, UCC 제작, 테러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테러정보 제공 및 연구자료 제공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6) 연합뉴스, 2010. 07. 07.

37) 경찰청, 앞의 책, 270면.

38) 위의 책.

39) 오세연·김학범, 앞의 논문, 102면.

3.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예방활동 강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인 테러예방 홍보활동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젊은 층은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테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방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접하고 있어 테러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예방대책과 교육훈련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⁰⁾

인터넷이라는 상호작용성이 뛰어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있어 정부의 홍보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⁴¹⁾

현재 인터넷을 통한 테러예방활동은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통해 국제테러정보, 대테러자료실, 안전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테러정보는 테러위험지역 안내, 국가테러별 정보, 테러사건일지, 테러사건통계, 우리 국민 피해사례, 대테러뉴스 등을, 대테러자료실에는 관계법령, 간행물과 리포트, 대테러상식, 국제테러단체 등을, 안전가이드에서는 개인의 안전, 직장내 안전, 여행시 안전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인터넷을 통한 대테러 피해 방지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통해, 해외테러와 치안상황을 휴대전화 SMS와 이메일로 실시간 알려주는 `해외테러위험지역 알리미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별 테러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지도와 테러통계 등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는 테러위험지역에 진출한 기업체들에게 대테러 정보

40) 위의 논문, 108면.

41) 박용현, 앞의 논문, 230면.

를 지원하는 `인터넷 테러정보 지원코너`도 신설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국정원의 각종 테러위험지역 안전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고, `테러정보 제보란`을 통해 맞춤형 테러·안전 컨설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⁴²⁾

경찰 역시 테러에 대한 초동조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대테러활동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정보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2005년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였다. 당시 런던 폭탄테러 이후 우리나라도 이라크 3대 파병국이자 APEC 정상회담 개최국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당시 테러 유형별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하여 테러 예방 및 대응요령을 홍보하였다. 경찰은 대테러센터의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앞으로 경찰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조직-공중성관계의 취지를 살려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⁴³⁾ 경찰은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테러정세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한 테러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사이버경찰청의 평화적 집회·시위 포털(www.police.go.kr)과 같이 테러예방을 위해서도, 사이버경찰청에 테러예방홍보센터 코너를 설치하여 여기에 정보화의 기본적 구성요소를 갖추고서 테러홍보 운영인력에 의해 테러에 관한 국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방법의 모색이 이

4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2010. 11. 30 검색\)](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2010. 11. 30 검색)).

43) 박용현, 앞의 논문, 231면.

루어져야 한다.⁴⁴⁾

IV. 테러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강화

1. 법적 토대 마련

경찰은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7조 지도점검」, 경찰청 훈령 제456호 국가대테러활동세부운영규칙 「제21조 테러예방대책 및 지도점검」 법령에 따라 시설의 중요도와 이용자 수에 따라 연간 2~4회(분기1회 또는 반기1회)에 걸쳐 대테러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시설주가 국내에서 테러조직에 의한 대형 테러사건 발생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으며, 행정지도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없고, 또한 시설주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실질적 보완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령상의 미비로 인해 테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경찰의 사전 예방활동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테러 발생시 상당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있다.

앞으로 법령·제정·정비·보완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물의 기준과 규모

44) 위의 논문, 232면.

· 용도 및 이용자수 등에 따라 테러장비 설치 기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주의 불이행에 따른 규제와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전체적으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테러의 직접적인 대상인 국민들은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테러 관련 입법 개정을 통한 테러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2008년 12월 18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2명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와 재난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해당시설 출입자에 대해 출입통제, 질문, 신원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이런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경찰이 테러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령 제정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테러의 규정, 테러의 목적, 테러 행위, 테러 유형의 죄 등 테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표 4>에서와 같이 테러사건유형에 따른 책임기관이 다양한데, 무엇보다 경찰의 테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테러리스트 규정기준이 모호하고, 테러조직 소속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더라도 입국을 차단할 뚜렷한 방도가 없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이 국내에 들어와 테러를 가했을 때만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표 4> 테러사건 유형별 책임기관

테러유형	관할기관	테러유형	관할기관
국내 일반 테러	경찰청	방사능 테러	교육과학기술부
항공기 테러	국토해양부	화학 테러	환경부 ⁴⁵⁾
해상 테러	해양경찰청	생물 테러	보건복지부
국외 테러	외교통상부	군사시설 테러	국방부

현재 논의 중인 가칭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해외 집단이나 결사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안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테러단체 구성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그가 출입국관리법을 어기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테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 부처들의 테러 관련 대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논쟁은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와 함께 국가정보원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로부터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보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업무영역의 명확성을 기하고 대테러 대응활동 등 적극적인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테러예방책으로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변화에 따른 법 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

45) 환경부는 테러에 이용가능한 화학물질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2010년 10월 이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반영하였다.

테러대응을 위한 법 제정의 사례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 김정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경호안전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법안을 재석 200명에 찬성 123명, 반대 69명, 기권 8명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경호안전특별법은 G20을 맞아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및 폭력시위 차단을 위해 G20 회담 경호업무 수행의 우선적인 법 적용, 대통령 경호처장이 단장이 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정상회의 관련 지역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호안전구역 지정,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필요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법안 9조 4항에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해 군과 경찰의 동원과 배치 장비 운용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경호안전특별법은 오는 6월부터 실시돼 G20 회담이 끝나는 11월15일까지 적용되었다.

한편에서는 경호안전특별법이 G20 이후에도 테러방지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국가로의 방향 및 인권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⁴⁶⁾ 이 법안은 인권침해 문제로 처리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안과 비교해볼 때, 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등이 내용과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다.⁴⁷⁾ 그러나 이는 G20 정상회의때 테러를 대비하여 제정

4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2010. 11. 30 검색\).](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2010. 11. 30 검색).)

4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2010. 11. 30 검색\).](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2010. 11. 30 검색).)

되었고, 11월 15일까지 적용되었던 한시적인 특별법이었다.

경찰 역시 경호안전특별법이 국가정보원장이 사실상 테러방지와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법안 9조 1항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보원장이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은 현재 경찰이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주요업무활동을 침범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앞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시,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테러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정비

경찰은 조직 자체의 정비를 통하여 대테러 활동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아프간 PRT 파견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외사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정보2계와 국제보안계를 통합하여 외사보안계로 개편하였다.⁴⁸⁾

경찰은 해외에서 테러 및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5개 언어권 총 21명으로 구성된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을

48) 경찰청, 앞의 책, 305면.

운영하였고, 2009년 3월 감식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1개 언어권 총 36명으로 확대, 재정비하였다. 2009년 3월 예멘 자살폭탄 테러 사건 처리 및 2009년 6월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망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독·영 수사팀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찰은 25개국 42개 공관에 48명의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함으로써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외도피사범의 검거·송환활동을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마약·테러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해외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있다.⁴⁹⁾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테러 방지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본 법률 마련과 함께 제도적인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계에선 ‘테러방지청’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테러학회는 ‘한국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전략’이라는 주제하에 한국테러학회장이 이만중 교수(호원대 법경찰학부)의 발표 논문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에 대한 권한 집중 우려”라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국토안보부(DHS)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국정원과 별도로 ‘테러방지청’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⁵⁰⁾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기획 업무를 담당할 ‘테러방지청’을 국가정보원 등 특정 기관 산하에 두지 않고 별도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16대부터 18대 국회까지 매년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대테러 실무 책임을 맡을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에 부딪혀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센터를 두는 것이 통합성·보안성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이나 관련 부처간 임무 조정이 곤란하다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¹⁾

49) 위의 책, 304-305면.

50) 김태훈, ‘국내에 테러리스트가 입국한다면’, 세계일보, 2010. 11. 22

대테러활동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은 법률 재정비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국가대테러센터 설치나 대테러센터의 이원화, 테러방지청 신설 등 그 어느 쪽이든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시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질서와 테러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설되는 기구나 제도가 경찰의 기본업무 영역을 중복되거나 침범당할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거나, 책임 전가식의 업무 회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내외 테러대응협조체제 구축

경찰의 테러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인납치, 요인테러, 중요시설대상 테러, 테러단체의 폭탄물 테러 등 각종 테러범죄에 대비한 수사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경찰은 국내 유관기관과의 대테러 모의훈련 등 대테러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관과의 대테러 합동훈련, 해외 경찰기관·대테러 정보·수사기관과의 대테러 공조체제와 공조수사체제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대테러 협조체제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작년 터키에서 개최된 「국제테러 심포지엄」(11월)참석과 함께 호주 경찰특공대, 연방경찰청 대테러 센터와의 대테러 합동훈련 및 워크숍(11월), 미국 인질협상교육(1월), 런던 대테러 엑스포(11월) 등 테러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해외 경찰기관과의 대테러 공조체제를 강화하였다.⁵²⁾

5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1/\(2010. 11. 30 검색\)](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1/(2010. 11. 30 검색)).

52) 경찰청, 앞의 책, 270면.

경찰청은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 사무국(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운영하며 전 세계 경찰기관과의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 체제를 통하여 국외 도피사범 송환, 테러정보 수집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성 범죄에 대응해 오고 있다.⁵³⁾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도 협조해 상습 외국인 과격 시위자의 명단을 확보해 입국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위해요소 종합 대응을 위해 일본, 미국 경찰과도 행사 기간 중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⁵⁴⁾

또한 미국 FBI, 한미연합사령부, 국가정보원, 인터폴 등 국내외 대테러 정보·수사기관과 공조 체제를 견고히 하여 활발한 첩보수집 활동을 펼쳤다. 대테러 협의회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5개국과 실질적인 교류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국제 중범죄 수사지휘 과정(JCLEC, 7월), 지역 고위관리자 과정(9월) 등 테러관련 해외 전문교육을 통해 대테러 수사·정보역량 향상은 물론, 외국 경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⁵⁵⁾

한편, 안보위해 우려자에 대한 입국 차단과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검색 등 국제공항만에 대해 외사보안 활동을 강화하였다.⁵⁶⁾

앞으로도 경찰은 대내외 테러 첩보와 정보 입수, 내사, 검거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사, 경비(대테러) 등 유관기능을 비롯하여, 대내외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 광범위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국외 정보기관과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FBI, CIA 등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공조활동은 물론 국제회의 참가국의 국내 상주공관 보안담당자들과 정보교류 활동 및 해외정보주재관, 경찰주재관의 인터폴을 통한 국제 테러정보수집에도 주력하여야 하며, 국제 테러협약자의 리

53) 위의 책, 300-301면.

54) 위의 책, 297면.

55) 위의 책, 297-298면.

56) 위의 책, 297면.

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⁵⁷⁾

국내외 테러동향에 대한 분석과 경찰의 대응 활동을 평가한 테러정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대테러 예방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경찰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테러 첩보와 정보 수집·전파 등의 대테러활동을 비롯한 대테러 대응훈련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경찰은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였다. 경찰은 테러 사전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G20 정상회의시 특수 방탄처리복을 입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로봇과 일본제 탐색용 디지털 내시경, 지능형 영상감시솔루션장비 등 최첨단 보안장비까지 동원해 테러에 대비하였다.

경찰은 이처럼 국가정상과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응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은 항공기와 지하철 등에 대한 폭발물테러 및 우편물 폭발테러 등 다양한 테러 대비 및 테러 유형별에 따른 테러대비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57) 이선기,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127면.

테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특공대는 주어진 대테러 임무에 충실하며, 다양한 테러사건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청별 단위의 경찰특공대의 편제 및 운영은 국내외의 테러위협 증가 추세로 볼 때,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인적 자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함께 훈련과 교육, 그리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테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인 테러예방 홍보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운영 인력도 배치되어야 한다. 테러에 관한 국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방법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테러에 대한 초동조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대테러활동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정보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른 업무영역의 명확성을 기하고 대테러 대응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안에서, 현재 경찰이 국내외 중요 국제행사 및 귀빈 해외순방시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테러 상황실을 운영하여 대테러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찰이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고,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정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대테러센터 설치나 테러방지청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시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질서와 테러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의 테러대응 역량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테러

대응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대테러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러대응훈련 실시와 연계된 주기적인 테러예방활동, 테러 전담 전문가 및 전문 테러대응 전담요원 양성과 교육, 테러정보체계의 일원화, 경찰의 대테러센터의 역할 강화, 그리고 경찰특공대에 확대 개편 및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첨단장비 확보 등이 요구되어진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경찰청, 2009 경찰백서, 경찰청, 2009.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2010.

경찰청, 2010년 치안정책액션플랜, 경찰청, 2010.

부산지방항공청, 부산 APEC 정상회의 안전한 하늘길을 열다, 부산지방항공청, 2005.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 평시국가 위기관리 정책방향과 과학기술 적용방안, 2007

한국테러학회, G20 정상회의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2010,

2. 논문 및 기타

권정훈·김태환,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29-50면.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박동균·신익주,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61-179면.

- 박용현,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 대응의 법사회학적 접근 -예방 홍보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3호,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2007. 7, 225-234면.
- 박준석, “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95-214면.
- 박준석,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2008, 157-172면.
- 서상열,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 2005, 99-131면
- 서상열,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235-259면.
- 오세연·김학범, 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 2010 여름호, 83-113면.
- 이상원, “counter-terrorism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화 방향”, 대테러연구 제31집, 경찰청, 2008, 193면.
- 이선기,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현장활동단계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2009, 105-138면.
- 이선기, “G20 정상회의시 안전대책방안 : VIP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2010년도 한국테러학회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테러학회, 2010, 30-38면.
- 정우일,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190면.
- 조성제·승재현,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9호, 2009, 274-283면.
- 최시영,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대테러 무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테러학회보 제3권 제1호, 2010 여름호, 167-191면.
- 최진태,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2008, 337-358면.
- 표창원, “대테러 경찰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테러연구 제29집, 경찰청, 2006, 96면.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테러정보통합센터(www.tiic.go.kr)

한국테러학회(www.ka-ts.or.kr)

책임연구보고서 2010-21

테러대응 역량강화 방안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